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

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
[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. 7. 12. 2017고단571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김상범(기소), 하지수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동헌 외 1인

【주문】

1

[피고인 1]

피고인 1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.

[피고인 2]

피고인 2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